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11651 손실보상금

원 고 1. A1

2. A2

3. A3

4. A4

5. A5

6. A6

7. A7

8. A8

9. A9

10. A10

11. A11

12. A12

13. A13

14. A14

15. A15

16. A16

17. A17

18. A18

19. A19

20. A20

21. A21

22. A22

23. A23

24. A24

25. A25

26. A26

27. A27

28. A28

29. A29

30. A30

31. A31

32. A32

33. A33

34. A34

35. A35

36. A36

37. A37

38. A38

39. A39

40. A40

41. A41

42. A42

43. A43

44. A44

45. A45

46. A46

47. A47

48. A48

49. A49

50. A50

51. A51

52. A52

53. A53

54. A54

55. A55

56. A56

57. A57

58. A58

59. A59

60. A60

61. A61

62. A62

63. A63

64. A64

65. A65

66. A66

67. A67

68. A68

69. A69

70. A70

71. A71

72. A72

73. A7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A'

피　　고　　B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B'''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6. 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마산수산업협동조합에 속한 가포 어촌계(원고 순번 1~50번), 구복 어촌계(원고 순번 51~57번), 난포 어촌계(원고 순번 58, 59번), 삼귀 어촌계(원고 순번

60~64번), 심리 어촌계(원고 순번 65~68번), 욱곡 어촌계(원고 순번 69, 70번), 옥계 어촌계(원고 순번 71, 72번), 반동 어촌계(원고 순번 73번)의 계원들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또는 같은 시 마산회원구 등에 거주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허가를 받아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원고들 중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상속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망인들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도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부산-경남간 광역권의 교통혼잡 해소 및 주요 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의 목적으로 '부산 강서구 천성동(가덕도)'과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거제도)'를 해저터널 및 교량으로 연결하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9.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4. 12. 16.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1단계)을 승인하였는데, 위 계획에 따라 피고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조합은 주무관청으로서 위 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과 민원업무 처리, 실시계획의 승인 및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어업손실보상절차의 진행경과

1) 이 사건 조합은 2005. 4. 30.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5. 5. 1.경부터 위 사업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이 가져 올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할

어업손실에 대하여 인근 해역 어업권자들에게 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2004년경 해당 어업권자들의 위임을 받아 이들을 대표한 거제수산업협동조합,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의창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05. 11. 9.부터 2007. 6. 18.까지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실태의 조사용역을 의뢰하였다.

3) 위 조사용역의 범위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해역으로 하고 조사대상은 어업피해가 발생되는 면허, 허가, 신고어업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보상대상물건으로 하며(이 사건 사업지점으로부터 직경 20km 이내의 해역에 선적항을 두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어업피해범위를 결정한 후 피해범위 내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업에 대하여 각 어업별, 물건별로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순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이 속한 어촌계 중 가포 어촌계를 제외한 나머지 어촌계들은 조사용역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어 그 피해정도에 관하여 공부조사 및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조합은 위 조사용역결과를 기초로 C감정평가법인, D감정평가법인 등에 보상액 산출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자들의 범위 및 손실보상금 등의 보상계획을 수립한 후 2007. 9. 10. '어업권자들은 2007. 9. 10.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이 사건 조합의 어업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고 물건조서 및 보상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해 11. 9.까지 2개월간 위 보상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마치고, 보상협의(계약체결) 후 어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어업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거제수산업협동조합,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의창수산업협

동조합에 소속된 어촌계 어민들뿐만 아니라 마산수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어촌계 중 일부 원고들이 소속된 구복, 난포, 삼귀, 심리, 욱곡, 옥계, 반동 어촌계 어민들에 대하여도 어업손실보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 중 순번 1~50번, 60~63번은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마산항개발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어업권 소멸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연근해 어업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감척보상금(폐업지원금 및 잔존 선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 이 사건 사업은 2010. 12. 23.경 준공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11. 6. 10.경 지방자치법 제164조, 제15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하였다.

다. 상속관계

1) 가포 어촌계에 소속되어 어업에 종사하던 G는 이 사건 소제기 전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으로는 자인 G1(상속지분 1/7, 이하 '분수'로만 표시한다), G2(1/7), G3(1/7), G4(1/7), G5(1/7), G6(1/7) 및 원고 A12(1/7)이 있는데, 원고 A12가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2) 가포 어촌계에 소속되어 어업에 종사하던 H은 이 사건 소제기 전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으로는 자인 원고 A17(1/6), A18(1/6), A19(1/6), A20(1/6), A21(1/6), A22(1/6)이 있다.

3) 가포 어촌계에 소속되어 어업에 종사하던 I은 이 사건 소제기 전 사망하였고, I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47(3/7), 자인 원고 A48(2/7), A49(2/7)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3호증 전부, 갑 67호증, 갑 68호증, 갑 69호증, 갑

70호증의 1, 갑 71호증, 갑 72호증의 1, 갑 73호증, 갑 74호증 전부, 갑 77호증, 갑 78호증 전부, 갑 7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부유사의 발생과 확산, 해수유동의 변화, 소음·진동 등의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위 사업의 사업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3조 제4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 형태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거제수산업협동조합,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의창수산업협동조합과 어업손실보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사업과 관련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며, 어업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보상업무를 담당한 자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이고, 2011. 6. 10.경 위 조합이 해산되고 난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 관련 소송업무, 추가 어업비 보상 지급업무 등을 승계받은 행정기관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인데, 그 중 원고들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경상남도인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 또는 경상남도가 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은 마산항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소멸보상금 또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인한 감척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중복보상에 해

당하여 부당하다(원고 순번 1~50번 및 60~63번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가 시작된 2005. 5. 1.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마산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한 2005. 12. 6.까지의 기간 동안의 손실보상청구는, 위 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어업권 제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하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05. 4. 30.자 이 사건 조합의 어업손실보상계획 공고에서였는바, 원고들은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이 사건에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가 2007. 6.경 제출한 어업손실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 중 토목공사는 크게 구분하여 침매터널 축조공사에

따른 준설공, 공유수면 매립공과 교량가설에 따른 교각기초공, 준설공 및 토공작업으로 인한 발파공 등으로 이루어진다. 위 공종에 따른 공정과 공사물량에 기인하여 사업지점을 중심으로 부유사의 발생과 확산, 해수유동의 변화, 해저지형의 변화 및 소음·진동 등의 해양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나) 일반적으로 교량가설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교각기초공사는 공사용 가교의 설치, 강관케이싱 설치, 강관파일 설치 항타 등의 공사를 포함하는데, 강관파일 설치 항타 공사 및 터널공사를 위한 발파시 소음이 발생하여 확산될 뿐 아니라 강관 내 굴착으로 인해 부유사의 발생과 확산이 일어난다. 부유물질은 대기권으로부터 바다에 들어오는 태양광선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는바, 생태계의 모든 식물과 동물은 식물의 광합성에 의한 유기물의 생산에 직·간접으로 의존하므로 이는 모든 어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부유물질은 아가미 호흡을 하는 수산동물의 아가미에 정착하여 호흡을 방해함으로써 생리적 장해를 유발하므로 모든 어업에 피해를 준다.

다) 토목공사 등은 해안 및 해저지형의 변화를 유발하여 해수유동에 영향을 미치고, 교각 및 접안시설 등 해상부에 설치된 인공축조물 자체도 해수의 유로를 차단하여 해류의 유속과 유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수유동을 변화시킨다. 이와 같은 해수유동의 변화는 사업지구 해역 일대의 퇴적환경을 교란하여 해저의 침식 또는 퇴적 현상을 나타나게 하고, 해수유동에 의해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수송되는 바다의 용존산소, 영양염, 플랑크톤, 오염물질 등에도 영향을 미쳐 어장의 어업생산성을 좌우하게 된다.

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목공사에서의 접속호안과 접속도로, 교각기초공사 및 부대시설공사의 수역시설은 해면에 영구적인 구조물을 축조하는 것이므로 축조물이 차지

하는 공간으로 인하여 해면 자체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축조된 구조물로 인하여 어선의 항행에 상당한 방해를 야기하고 어망의 설치 및 운용에 지장을 주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해면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하는 부유사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탁방지막도 일정 수역을 폐쇄할 뿐 아니라 어선의 항행, 어망의 설치 및 운용에 지장을 준다. 결국 이러한 인공축조물은 조업 어장의 축소라는 결과를 야기하여 연안어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마) 이 사건 공사의 공정 중 각종 침매터널 공사구간에서의 수중발파 및 해상토공작업에 따른 육상발파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은 연안어업에 있어 청각을 가진 어류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바) 위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해인자들로 인한 어선어업의 피해기간은 평균 6.17년[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직접 해상작업공정에 소요되는 기간 5.17년(2005. 5.경부터 2010. 6.경까지) + 생태계 및 수산자원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이고, 구복, 난포, 삼귀, 심리, 욱곡, 옥계, 반동 어촌계의 경우 피해율은 4% 내지 6.9% 정도이다(연안어업에서의 어선들의 선질은 1980년대 및 199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어선의 어장이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연안어업에서의 어선들은 출항 후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까지 전속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데 선적항으로부터 어장까지의 이동거리는 20~40km 정도이고, 복합, 자망, 통발 어업의 경우 어구의 뻗친 길이가 짧게는 3km에서 길게는 10km 정도인바, 연안어업에서의 어장이용 범위는 선적항으로부터 30~50k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와 같은 어장의 이용범위는 어선의 크기 및 마력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총톤수×마력수'의 값이 클수록 어선의 이동성이나 어장의 이용범위는 커지게 된다. 위와 같은 어선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살펴본 마산시 산하 어촌계들의 조업구역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어업생산감소율 50% 지점에까지도 미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7호증, 갑 69호증, 갑 71호증, 갑 74호증 전부, 갑 79호증, 갑 8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서성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공사과정에서의 부유사의 발생과 확산, 해수유동의 변화, 해저지형의 변화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어업생산량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가포 어촌계의 경우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의 어업손실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조사대상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가포 어촌계는 위 조사용역의 대상지역으로서 위 최종보고서에도 그 피해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마산수산업협동조합 소속의 명주 어촌계, 덕동 어촌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역시 위 최종보고서에 그 피해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삼귀 어촌계와도 이 사건 공사기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가포 어촌계에 소속된 원고 순번 1~50번의 경우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로서 구복, 난포, 심리, 욱곡, 옥계, 반동 어촌계에 소속된 나머지 원고들과 그 조업형태 및 조업구역도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가포 어촌계와 구복, 난포, 삼귀, 심리, 욱곡, 옥계, 반동 어촌계를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호는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

동·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의2호는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위와 같은 해양환경의 변화는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해양오염 또는 생태계 질서의 교란 등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해당한다.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661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과정에서 환경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공사방법의 변경, 그로 인한 예산의 증액 등의 사항 또한 결정할 수 있는 등 위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어업권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 또는 경상남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조합 또는 경상남도가 위 규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중복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

(1) 우선 마산항개발사업에 따른 어업권 소멸보상금의 수령으로 이 사건 청구가 중복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순번 1~50번 및 60~63번이 마산항개발사업에 따른 어업권 소멸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72호증의 1, 갑 75호증, 갑 8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마산항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소멸보상금의 보상대상자를 결정하는 보상기준일은 위 사업의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인 2005. 12. 6.이지만 위 소멸보상금은 위 마산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장차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 어업을 종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어민들의 어업손실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취지로 원고들의 어업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순번 1~50번 및 60~63번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공사가 시작된 2005. 5. 1.부터 어선원부상 어선말소일(별지1 목록 기재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공사로 발생한 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생산량 감소 등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금은 마산항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소멸보상금과 그 지급 취지와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소멸보상금에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분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 그 보상범위도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 순번 1~50번 및 60~63번의 경우 2005. 5. 1.부터 2005. 12. 6.까지의 기간 동안의 손실보상청구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공사로 인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어업권 제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사가 시작된 2005. 5. 1.경부터

부유사의 발생과 확산, 소음·진동 등의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어업생산량 감소 등의 실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인한 감척보상금의 수령으로 이 사건 청구가 중복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 순번 1~50번 및 60~63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 감척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69호증의 기재, 증인 서성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척보상금은 어업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어선세력을 감척하고 감척대상 어선의 어업의 폐지로 인한 장래의 수입을 보상해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어선, 어구에 대한 잔존가치평가액 및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 사업의 시행주체는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감척보상금은 국고와 지방비 등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척보상금은 그 성격상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위 감척보상금과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그 취지와 목적, 지급주체 및 상대방 등이 상이한 것으로 위 감척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이 동일한 어업권자에게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복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보상범위가 중복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마산수산업협동조합에 속한 신마산 및 용마산 어촌계의 계원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의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3490호, 소 제기일 2010. 7. 20.)과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1나7727호, 항소 제기일 2011. 10. 5.)에서도 위 신마산 및 용마산 어촌계 계원들을 소송대리하였는데, 제1심 진행 중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고 경상남도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11. 8. 18.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판결에서는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위 신마산 및 용마산 어촌계 계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어촌계 계원들의 조업구역에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위 어촌계 계원들의 어업에 직접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어업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위 신마산 및 용마산 어촌계 계원들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2. 4. 20.경 이 사건 피고로 피고경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를 이 사건 조합으로 유지한 채 2012.

8. 21. 위 어촌계 계원들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이므로 이 사건 조합을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의 주체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부산고등법원 2011나7727호 사건의 항소가 제기된 2011. 10. 5.부터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2. 8. 21. 사이에 원고들의 어업손해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인 피고의 사업진행으로 인한 것임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를 경상남도에서 피고로 경정하는 신청서가 위 항소가 제기된 2011. 10. 5.로부터도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2. 3. 19.에 제출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

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66호증 전부, 갑 67호증, 갑 73호증, 갑 74호증 전부, 갑 7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1 목록 어업손실액항 기재 금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의 산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보상금액'

(1) 원고 순번 1~50번은 가포 어촌계 소속으로 가포 어촌계의 경우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의 조사용역보고서에는 그 피해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마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D감정평가법인의 자문을 받아 산출한 추정 보상금액 기준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1톤 미만 선박의 경우 3,396,000원, 1톤 이상 2톤 미만 선박의 경우 4,817,000원, 2톤 이상 3톤 미만 선박의 경우 5,565,000원(이상 마산항개발사업의 해당 톤급 생산량의 평균값에 거가대교의 판매단가와 어업경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피해율은 인근 지역의 피해율을 적용)이 되고, 4톤 이상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10,436,000원이다(원고 순번 26, 39번 및 47~49번 제2성진호의 경우 선박의 톤수가 4톤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을 5,565,000원으로 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 위 원고들이 청구한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2) 원고 순번 52, 53, 56, 60, 61, 62, 63, 66, 67, 69, 70, 73번 및 64번 중 제3영국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평가 사정조서(갑 73호증)에 보상금

액이 기재되어 있는바(원고 순번 61, 62, 63번의 경우 위 사정조서에는 각 종전 소유자인 A61', A62', A63'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위 원고들의 경우 그 보상금액에 의한다(원고 순번 61번의 경우 위 사정조서 상의 보상금액은 4,069,500원임에도 3,500,000원으로 하여 청구하였는바, 위 원고가 청구한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3) 원고 순번 51, 54, 55, 57번은 구복 어촌계 소속으로 마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D감정평가법인의 자문을 받아 산출한 추정 보상금액 기준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1톤급 선박의 경우 4,500,000원, 2톤급 선박의 경우 5,000,000원(이상 해당 어촌계의 톤급별 보상액의 평균값), 연안선망의 경우 5,000,000원(구복 어촌계 최대 톤수 보상액의 평균값)이다.

(4) 원고 순번 58, 59번은 난포 어촌계 소속으로 마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D감정평가법인의 자문을 받아 산출한 추정 보상금액 기준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1톤 미만 선박의 경우 5,000,000원, 4톤급 선박의 경우 10,000,000원(이상 해당 어촌계의 톤급별 보상액의 평균값)이다.

(5) 원고 순번 64번은 삼귀 어촌계 소속인데 그 소유의 7.93톤의 00호의 경우 마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D감정평가법인의 자문을 받아 산출한 추정 보상금액 기준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7,300,000원(해당 어촌계 최대 톤수 보상액의 평균값)이 된다.

(6) 원고 순번 65, 68번은 심리 어촌계 소속으로 마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D감정평가법인의 자문을 받아 산출한 추정 보상금액 기준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1톤급 선박의 경우 5,400,000원, 3톤급 선박의 경우 10,000,000원(해당 어촌계의 톤급별 보상액의 평균값)이다.

(7) 원고 순번 71, 72번은 옥계 어촌계 소속으로 마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D감정

평가법인의 자문을 받아 산출한 추정 보상금액 기준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1톤급 선박의 경우 5,400,000원, 3톤급 선박의 경우 7,400,000원(해당 어촌계의 톤급별 보상액의 평균값)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피해시작일'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2005. 5. 1.이 피해시작일이자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산일이 된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만료일'

손해배상액 산정의 종기일은 각 어선원부상 어선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날이다.

라) 별지1 목록 기재 '피해일수'와 '피해연수'

별지1 목록 기재 '만료일'에서 '피해시작일'을 뺀 것이 '피해일수'가 되고, 그 일수를 년으로 환산한 것이 '피해연수'가 된다.

마) 별지2 목록 기재 '조정계수'

이 사건 공사로 인근 해역의 어업권에 피해를 입힌 기간이 6.17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6.17년에서 별지1 목록 기재 '피해연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정계수이다.

바) 별지1 목록 기재 '어업손실액'

별지1 목록 기재 '보상금액'에 '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이 '어업손실액(1,000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책임의 제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인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

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의 공사로 인해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68호증, 갑 72호증의 1, 갑 7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공사기간 동안 마산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각종 공사가 시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공사현장 인근의 어장에서 해양환경의 변화로 어획량의 감소가 발생한 사실, 원고들이 속한 어촌계는 마산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어업에 의한 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인 어획물의 시장가격은 어획량, 소비자들의 선호 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따라 등락이 있어 이러한 사정 역시 어업으로 획득하는 수익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해양환경의 변화 등은 피고가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발생을 예방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들이 속한 어촌계의 어장이 이 사건 사업 현장 인근에서 시행된 공사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어류의 서식환경 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일 이후 원고들에게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는바 그에 따라 다른 자연적, 후발적 환경요인들이 개입하였을 가능성

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고의 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연력 등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이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연력 등이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 자연력 등의 기여도 비율은 약 5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어업손실액항 기재 금액 중 피고의 책임범위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별지2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6.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양희

판사 조승우

판사 나상아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

	청구금액(원)	인정금액(원)
1. A1	1,052,000	526,000
2. A2	1,052,000	526,000
3. A3	1,052,000	526,000
4. A4	2,545,000	1,272,500
5. A5	1,052,000	526,000
6. A6	1,052,000	526,000
7. A7	1,052,000	526,000
8. A8	2,104,000	1,052,000
9. A9	1,493,000	746,500
10. A10	1,493,000	746,500
11. A11	1,493,000	746,500
12. A12	1,493,000	746,500
13. A13	1,493,000	746,500
14. A14	1,052,000	526,000
15. A15	1,052,000	526,000
16. A16	1,052,000	526,000
17. A17	424,166	212,083(1,272,500 중 A17의 상속지분 1/6 해당금액, 원 미만은 버림)
18. A18	424,166	212,083(1,272,500 중 A18의 상속지분 1/6 해당금액, 원 미만은 버림)
19. A19	424,166	212,083(1,272,500 중 A19의 상속지분 1/6 해당금액, 원 미만은 버림)
20. A20	424,166	212,083(1,272,500 중 A20의 상속지분 1/6 해당금액, 원 미만은 버림)
21. A21	424,166	212,083(1,272,500 중 A21의 상속지분 1/6 해당금액, 원 미만은 버림)
22. A22	424,166	212,083(1,272,500 중 A22의 상속지분 1/6 해당금액, 원 미만은 버림)
23. A23	1,493,000	746,500
24. A24	1,493,000	746,500
25. A25	1,052,000	526,000
26. A26	1,725,000	862,500

27. A27	1,052,000	526,000
28. A28	1,493,000	746,500
29. A29	1,543,000	771,500
30. A30	1,052,000	526,000
31. A31	1,052,000	526,000
32. A32	1,493,000	746,500
33. A33	1,493,000	746,500
34. A34	1,493,000	746,500
35. A35	1,543,000	771,500
36. A36	1,493,000	746,500
37. A37	1,052,000	526,000
38. A38	2,986,000	1,493,000
39. A39	1,725,000	862,500
40. A40	1,493,000	746,500
41. A41	1,493,000	746,500
42. A42	1,493,000	746,500
43. A43	1,052,000	526,000
44. A44	1,052,000	526,000
45. A45	1,052,000	526,000
46. A46	1,052,000	526,000
47. A47	1,400,571	700,285(1,634,000 중 A47의 상속지분 3/7 해당금액, 원 미만 버림)
48. A48	933,714	466,857(1,634,000 중 A48의 상속지분 2/7 해당금액, 원 미만 버림)
49. A49	933,714	466,857(1,634,000 중 A49의 상속지분 2/7 해당금액, 원 미만 버림)
50. A50	1,052,000	526,000
51. A51	700,000	350,000
52. A52	2,400,000	1,200,000
53. A53	1,083,000	541,500
54. A54	1,035,000	517,500
55. A55	1,150,000	575,000
56. A56	1,884,000	942,000
57. A57	1,000,000	500,000
58. A58	2,300,000	1,150,000
59. A59	1,150,000	575,000
60. A60	2,691,000	1,345,500
61. A61	1,995,000	997,500
62. A62	2,565,000	821,500

63. A63	2,475,000	723,500
64. A64	5,031,000	2,515,500
65. A65	1,242,000	621,000
66. A66	2,101,000	1,050,500
67. A67	1,312,000	656,000
68. A68	1,000,000	500,000
69. A69	569,000	284,500
70. A70	1,672,000	836,000
71. A71	756,000	378,000
72. A72	1,036,000	518,000
73. A73	1,832,000	916,000
	합계 101,346,000	합계 49,697,997